# 「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 연 희

### 나. 제안이유

O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1조의2)
- O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)

#### 라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O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- 본 조례안은
  - 박정희대통령 숭모관 건립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.

#### 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령「지방자치법」의 내용상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향후 집행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박정희대통령 생가·주변 시설물·역사자료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: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<u>수정가결</u>